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44호, 2026. 6. 2. 공포, 2026. 9.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u>

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44-203-3163